

동작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 이 주택은 공동체 주택으로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관리 및 공동요금 등의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 최종 입주자는 동작구청에서 진행하는 공동체 주택 생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수도꼭지, 전구, 도어락 등 단순 소모품 수리 교체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부담주체는 입주자입니다.

동작구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3개소 8세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본 입주자 모집 주택은 청년 자립 지원의 일환으로 월 임대료를 입주 대상자에게 일부 지원하는 주택으로 공급 예정이며, 지원 기간 및 방식, 금액 등은 향후 입주 대상자에게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이 주택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바탕으로 개인의 전용 공간은 물론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입주자 간 자율·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주택으로서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제출서류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마감 후 서류의 반환 또는 수정은 불가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급 개요

□ 공급일정

신청접수 (전자우편 제출)	입주 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SH공사 방문)	입주
'25. 5. 12(월) ~ 5. 15(목) 23:00 마감	'25. 8. 8(금)	'25. 8월 중 (대상자 개별통보)	'25. 8~10월 (대상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SMS로 통지됩니다.

□ 주택개요

구 분	금번 공급규모	전용면적	주차면수	비 고
STUDIO상도14 (양녕로23길 122)	1세대 (총 14세대)	27.32㎡	6면	· 승강기 설치 · 커뮤니티실 有
STUDIO대방56 (여의대방로62길 22)	3세대 (총 56세대)	29.99㎡	26면	· 승강기 설치 · 커뮤니티실 有
		29.99㎡		
		29.79㎡		
STUDIO사당35 (사당로2길 48)	4세대 (총 35세대)	29.95㎡	16면	· 승강기 설치 · 커뮤니티실 有
		29.95㎡		
		29.95㎡		
		29.95㎡		

□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 (※공동관리비는 별도 부담)

주택명	호	세대별 전용면적 (㎡)	소득 50%이하(자산기준 충족)		소득 50%초과 70%이하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STUDIO상도14 (양녕로23길 122)	303	27.32	18,480,000	190,500	30,817,000	317,600
STUDIO대방56 (여의대방로62길 22)	201	29.99	12,160,000	158,400	20,290,000	264,300
	401	29.99	12,160,000	158,400	20,290,000	264,300
	411	29.79	11,870,000	154,600	19,790,000	257,900
STUDIO사당35 (사당로2길 48)	203	29.95	24,340,000	250,900	40,580,000	418,100
	701	29.95	25,330,000	260,900	42,210,000	435,000
	804	29.95	25,330,000	260,900	42,210,000	435,000
	904	29.95	25,330,000	260,900	42,210,000	435,000

- 재 공 급 :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한 재공급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지원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 등을 활용 입주 대상자에게 월 임대료 일부 지원 예정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 동작구청 출자기관)

(예시)월 임대료 지원방식 : ① (SH공사) 월 임대료 260,900원 입주자에게 부과
② (입주자) 월 임대료 260,900원 SH공사에 납부
③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입주자 부담금 10,000원 제외한 250,900원 차액 지원

*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내용은 향후 입주자 발표 선정 후 대상자 등에게 상세 안내 예정이며, 지원 금액, 기간 및 방식 등은 행정적·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중지 등) 추진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기본요건

공고일('25.05.01.)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한함)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 1985. 05. 02. ~ 2006. 05. 01. 출생
- 가구원 전원 무주택
- 혼인중이 아닐 것 / 외국인 신청 불가

□ 소득 · 자산기준

구 분	기 준					
소 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2,518,715원	3,286,202원	3,813,487원	4,289,044원	4,515,524원
	월평균소득 70% 이하	3,238,348원	4,381,602원	5,338,881원	6,004,662원	6,321,734원
소 득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가구원 1인당 소득 50% 이하 351,019원, 소득 70% 이하 491,426원을 합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주택 자격기준 적용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은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관한 내용은 공고문 4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자 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총자산가액 : 2.37억원 이하 (※ 자산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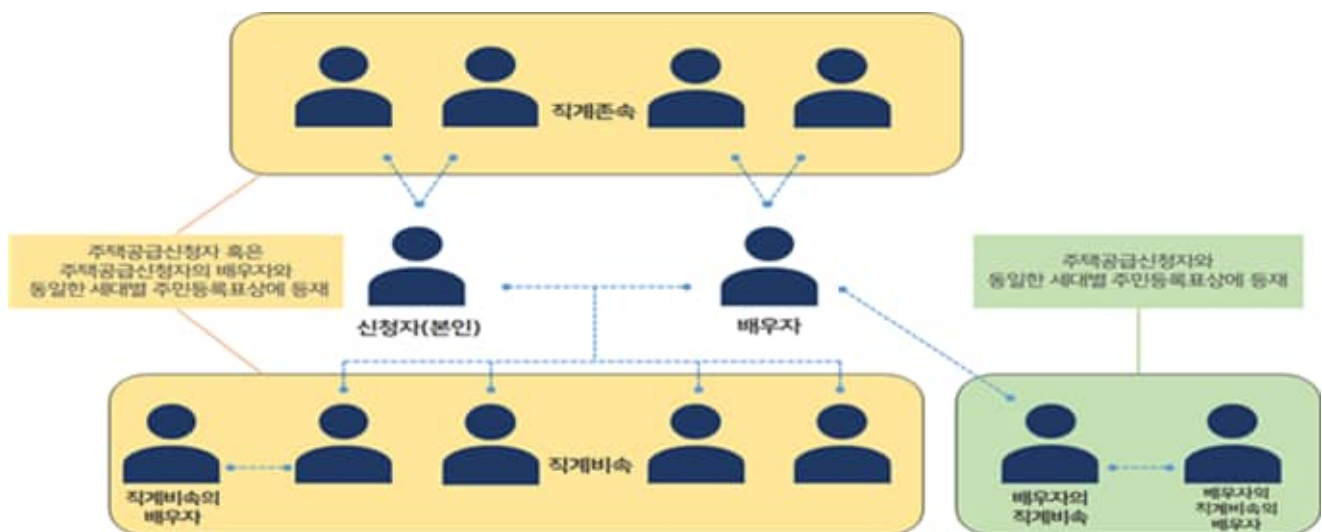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형제·자매는 세대구성원이 아니며(직계존비속 불포함), 따라서 자격검증대상이 아님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2호, '23.3.31.(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자 선정 방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배점(100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0점)		50% 이하	40점
		50% 초과 70% 이하	35점
2. 거주기간 (40점) * 해당칸에만 배점	동작구 거주기간	5년 이상	40점
		3년 이상 5년 미만	35점
		3년 미만	30점
	동작구 외 서울시 거주기간	5년 이상	25점
		3년 이상 5년 미만	20점
		3년 미만	15점
3. 별도 가점 (20점)		동작구 소재 대학 재학(입학예정·휴학 포함) 또는 사업장 근무	10점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거주 10점,	10점
		해당없음	0점

※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5.05.01.) 현재까지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재등록·재전입 신고일부터 기산함

※ **기타 가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5.05.01.) 현재 동작구 소재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이거나 동작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중인 경우 및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중인 경우에 부여하며, 증빙자료(공고문 7페이지 참고)를 제출해야 함

□ 대상자 선정 방법

- 신청자의 서류심사(기본요건 충족, 필수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및 배점항목표 배점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공급 규모의 6배수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조회 후 배점항목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최종 선정
- 동점자 경합 시, ①동작구 거주기간이 긴 순 ②소득가액이 낮은 순 ③신청자 생년월일이 느린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배수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 공실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급함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4. 입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5. 15.(목) 23:00 마감 *도착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신청 서류 첨부하여 제출)
 - 동작구청 이메일(publichousing@dongjak.go.kr)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 ※ 전자메일 주소 오기재, 전산오류, 대상자 필수 공통 제출서류 누락 제출 등으로 인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접수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반드시 마감시간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발송 시 (제목)은 “동작청년_성명(생년월일)” 로 작성하며 (제출서류 파일명)은 “성명(생년월일)_제출서류” 으로 첨부하여 발송
 - ※ 예시 (전자우편 발송제목) “동작청년_김노량(050512)”
(제출서류 파일명) “김노량(050512)_제출서류”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 서류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 시 식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스캐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신청)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 누락 제출 시 심사 제외
 - 1) 대상자 필수 공통 제출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인 기준으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신청자 작성 [공고문에서 양식 다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님(조부모 포함)을 의미함 (형제/자매/동거인은 포함하지 않음)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하며,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서명 필요 (개인 사인이 아닌 한글 정자로 이름 기입, 예시참고)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원 전원의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의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각 1부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씩 제출 - 등본 : 세대 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 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초본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되도록 발급	동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상세내역으로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해당사실 증명서류 반드시 제출)

2) 배점항목 증빙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 상 자	내 용	발급처
동작구 대학생 자격증명 (별지 제5호 서식)	- 재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제출, 재적증명서는 불가함)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신청서류양식 별지 제5호)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재학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졸업유예자,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음	해당교육기관
동작구 사업장 근무 증빙	-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통 ※ 재직증명서에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야함(동작구 소재지 확인)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재직기관 건강보험공단
(반)지하·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확인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증	-

※ 모든 서류를 스캐너를 이용해 한 번에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첨부하여 제출
(그림파일, 압축파일로 형태로 제출 금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5. 05. 0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심사과정 등에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 또는 이메일 전송오류, 신청자 착오에 의한 필수 공통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한 신청 미접수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5.15. 23시 이후 도착분)는 무효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입주신청서’의 가구원 수 작성과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구원 서명 시 잘못 작성하는 신청인이 많습니다. (예시 : 형제·자매·동거인 포함 작성,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미포함 작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포함범위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서”의 가구원 수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의 가구원 수는 동일해야 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 전원이 한글정자로 서명,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가구원은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임)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항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통보를 생략하며,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와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며,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사전 주택공개 : 접수기간 전·중 미실시

- ☐ 주택 보안 등의 사유로, 접수기간 전·중에는 주택을 공개하지 않으며,
추후 입주 전 교육 및 호실 배정 시(2025. 8. 14.) 해당 주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6. 대상자 발표

- ☐ 발표일 : 2025. 8. 8.(금) 17시 이후 ※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발표방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SMS로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당첨자의 주소/연락처/이메일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를 먼저 공급하고 예비자 소진 후 추가모집할 수 있음

7. 입주 전 교육 및 호실 배정

- ☐ 일 시 : 2025. 8. 14.(목) 14시
- ☐ 장 소 : STUDIO대방 56 1층 커뮤니티실 (대방동9길 7)
- ☐ 내 용 :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및 종료 후 호실 공개배정
- ※ 교육종료 후 입주 순번에 따라 희망호실을 우선 선택합니다. 입주자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불참자는 당첨취소됩니다. 호실배정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합니다.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지됩니다.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란?

- ▶ 기존 공공주택에서 입주자들이 관계 기반의 공동거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주민 간 갈등 해결이나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
-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문가(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 코디네이터 등)의 진행에 따라 입주자들이 공동체주택 취지 및 주택관리상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입주자 자치규약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 본 교육은 맞춤형 주택 입주자 참여 의무사항으로, 입주 중 진행하며(매년 6회 내외) 미참여 시 재계약 거절 등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활동 프로그램(예정)

분류		운영 내용	진행횟수
의무	교육 프로그램	○ 소방 교육, 폭력예방 교육, 집수리 교육	각 연1회
	입주민 총회	○ 자치규약 제정, 입주자 갈등관리	월 1회
	입주민 상담진행	○ 주거만족도 조사 및 공동체 프로그램 수요조사	입주 후 1~2회
비의무	문화교육 프로그램	○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수요에 따른 교육진행	월 1회

8. 계약 및 입주

구 분	일 정	비 고
계 약	2025. 8월 중 ※ 대상자 별도 통지 예정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49, 8562, 8564
입 주	2025. 8 ~ 10월 중 ※ 대상자 별도 통지 예정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 ☎ 02-828-5100~1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선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취소됩니다.

- 계약 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 잔금 납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와 최소 2주 전 입주일을 협의 후 입주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입주 종료일 익일부터 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임.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임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사전 교육 시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규약 제정 및 공동체 활동 등) 청취 및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관악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 STUDIO상도14, STUDIO대방56, STUDIO사당35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 설치 등으로 인한 관리비가 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청년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용에 따른 수도료·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상호전환(월 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제도 안내

- ▶ 표시된 월 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임.(예 : 월 임대료 1만원 인하 시 임대보증금 약 180만원이 인상됨.)
- ▶ 표시된 임대보증금에서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2.5%임.(예 : 임대보증금 100만원 인하 시 월 임대료 약 2,000원 인상됨)
- ▶ 상호전환 시기는 본 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 문의 : 관악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 02-828-5100~1

9. 유의사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등 해당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할증구간	할증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일 이전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예: 동작구 전입일자 등을 실제보다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 불가)하고,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5. 1.)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기간 내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소명되지 않을 시 배점 차감 또는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00% 이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고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발생한 공가세대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는 입주대상자 발표 시 함께 발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되며, 입주대상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동작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선정사실 미확인 및 미계약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주택 미선택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 호실 배정은 입주대상자 발표 후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며, 호실배정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선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계약)자가 된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됩니다.
기금대출 등 입주관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관악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02-828-5100~1)에서 담당합니다. • 공고된 주택 내 커뮤니티실 등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며 STUDIO상도14, STUDIO대방56, STUDIO사당35 주택의 경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대주택 입주시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및 기타 관리비용 등)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주체는 입주자임) • 계단, 복도, 현관, 공용공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동체 규약에 입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입주자에게만 개방합니다. 다만, 유허 주차장 발생 시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활동에 미참가 시 추후 재계약 거절 등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 배정은 최종 입주 순위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므로 저층 또는 고층에 배정될 수 있고, 공동주택 특성상 생활소음 또는 조망권 제한,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청년 1인가구 전용 공공주택이므로 본인 외의 가족구성원 등이 함께 거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입주자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입주민에게 통보 후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발송(전송)오류, 필수 구비서류 미제출(누락) 등으로 인한 신청 미접수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 도착 서류는 무효로 간주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상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나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호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구청·동주민센터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발생 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타 입주자에 성희롱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동법 제49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동법 제49조의 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법 제57조의 3)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하수도법 제2조, 65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 34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공동체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 동작구청 청년청소녀과 청년지원팀 ☎ 02-820-9346, 9175, 9323
-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49, 8562, 8564
- 입주 및 재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 ☎ 02-828-5100~1

별첨 STUDIO상도14

- 주택위치 :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3길 122(상도동 279-63)
- 주택 보안등의 사유로, 접수기간 전·중에는 사전 주택 공개하지 않습니다. 호실 평면도와 주택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사전 교육 및 호실 추첨 시 주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원룸형 다세대 주택으로 1인 1세대 거주하며, 빌트인 가전은 없으니 입주 시 참고바랍니다.

〈 위치도 〉



〈 주택 전경 〉



〈 내 부 시 설 〉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무인택배함



커뮤니티실

※ 각 동·호수별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평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STUDIO대방56

- 주택위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22(대방동 516)
- 주택 보안등의 사유로, 접수기간 전·중에는 사전 주택 공개하지 않습니다. 호실 평면도와 주택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사전 교육 및 호실 추첨 시 주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원룸형 다세대 주택으로 1인 1세대 거주하며, 빌트인 가전은 없으니 입주 시 참고바랍니다.

〈 위치도 〉



〈 주택 전경 〉



〈 주 택 사 진 〉



거 실



주 방



욕 실



다용도실



주 차 장



커뮤니티실

※ 참고용으로 각 동·호수별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평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STUDIO사당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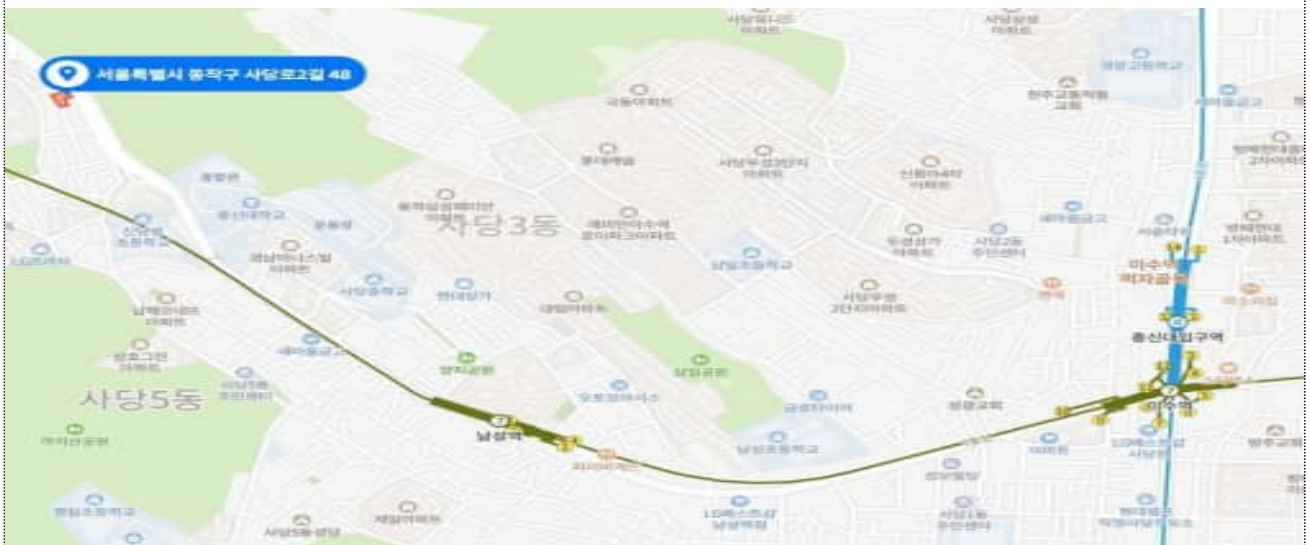
□ 주택위치 : 동작구 사당로2길 48(사당동 182-3번지)

□ 주택 보안등의 사유로, 접수기간 전·중에는 사전 주택 공개하지 않습니다. 호실 평면도와 주택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사전 교육 및 호실 추첨 시 주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원룸형 다세대 주택으로 1인 1세대 거주하며, 빌트인 가전은 없으니 입주 시 참고바랍니다.

〈 위치도 〉



〈 주택 전경 〉



〈 주 택 사 진 〉



거 실



주 방



욕 실



다용도실



주 차 장



커뮤니티실

※ 각 동·호수별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평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 신청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⑧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⑩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⑪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자산 기준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 (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업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자산 기준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거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가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